#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일자 : 2012년 3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○『지방공무원 임용령』 개정(대통령령 제23093호, '11.08.24. 시행)에 따른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행안부 예규 제380호에 따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,

○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및 부서간 일부 업무조정 등의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조정 : 540명 → 547명(+7)

○ 집행기관의 정원 : 528명 → 535명(+7)

-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2명
- 가축질병 예방에 따른 인력증원 1명
-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에 따른 인력증원 4명

○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(변동없음)

나. 직종별 정원 조정

○ 일반직 : 421명 → 443명(+22)

■ 5급 : 25명 → 26명(+1)

■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: 392명 → 413명(+21)

○ 별정직 : 18명 → 7명(△11)

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: 18명 → 7명(△11)

○ 기능직 : 69명 → 65명(△4)

다.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

○ 일반직 : 80%이상 → 85%이상(증5%)

○ 기능직·고용직 : 16%이내 → 12%이내(△4%)

○ 별정직·정무직 : 4%이내 → 3%이내(△1%)

라.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

○ 일반직 공무원(변동없음)

○ 기능직 공무원

| 구 분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
|---|---|---|---|---|
| 현행 | 4.5% 이내 | 14% 이내 | 18% 이내 | 63.5% 이상 |
| 조정 | +0.5% | +3% | +4% | △7.5% |
| 개정 | 5% 이내 | 17% 이내 | 22% 이내 | 56% 이상 |

○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(변동없음)

○ 별정직 공무원

| 구 분 | 5급 상당 | 6급 상당 | 7급 상당 | 8급 상당 | 9급 상당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현행 | | 78% 이내 | 22% 이상 | | |
| 조정 | | △35% | +35% | | |
| 개정 | | 43% 이내 | 57% 이상 | | |

**3. 참고사항**

가. 근거법령

○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

○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6의2호

○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

○ 지방사무기능직개편을 위한 조직·인사 처리지침
(행안부 예규 제371호)

○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(예규 제380호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　　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2) 개정조례안 : 별첨

3) 입법예고(2012. 2. 29 ~ 3. 20) : 의견 있음

| 의견제출자 | 제 출 의 견 | 조 치 여 부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재무과장 | □ **기능직 소수직렬 상위직급(7급) 배정 요구**<br><br>○ 타 직렬에 비해 상위직급(7급)점유비율이 낮은 전기, 열관리, 전화 등 기능직 소수직렬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정체된 승진 기회부여 요망 | **반영( ✓ )　미반영(　　)**<br><br>○ 운전·사무직렬 등 타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위직급(7급)점유비율이 낮은 기능직 소수직렬(전기, 열관리, 전화, 위생 등)에 대해 정원책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직렬·직급별 형평상 불균형을 없애고 이로 인해 정체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<br><br>**· 직렬·직급 조정**<br>- 기능7급(위생) : 현행 1명 →<br>조정 2명(+1) | |
| 보건소장 | □ **전문직종분야 기능직 직급 상향 조정 요망**<br><br>○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물리치료사, 임상병리사 등 전문 직종분야에 대한 직급 상향 조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| **반영(　　)　미반영( ✓ )**<br><br>○ 물리치료사, 임상병리사 등 전문직종임에도 타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나,<br>○ 처우개선을 위한 기능직 직급 상향 조정에는 한계가 있어, 차후 직렬별 직급 조정 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 | |

성주군 조례 제 호

#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40명”을 “54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528명”을 “535명”으로 한다.

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구분 | 일반직 | 기능직·고용직 | 별정직·정무직 |
|---|---|---|---|
| 비율 | 85% 이상 | 12% 이내 | 3% 이내 |

별표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| 구 분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
|---|---|---|---|---|
| 비율 | 5% 이내 | 17% 이내 | 22% 이내 | 56% 이상 |

별표2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| 구 분 | 5급 상당 | 6급 상당 | 7급 상당 | 8급 상당 | 9급 상당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율 | | 43% 이내 | 57% 이상 | | |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이 조례의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 한 시점으로 한다.
③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초과 현원이 해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을 금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(1)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2조(정원의 총수)성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40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집행기관의 정원 : 528명<br>2. (생략) | 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<br>---- 547명----------.<br>1. ---------- 535명<br>2. (현행과 같음) |

# 신·구조문대비표(2)

## 현 행

〔별표1〕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

| 구분 | 일반직 | 기능직·고용직 | 별정직·정무직 |
|---|---|---|---|
| 비율 | 80% 이상 | 16% 이내 | 4% 이내 |

〔별표2〕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2. 기능직 공무원

| 구분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10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율 | 4.5% 이내 | 14% 이내 | 18% 이내 | 34% 이내 | 29.5% 이상 |

4. 별정직 공무원

| 구분 | 5급 상당 | 6급 상당 | 7급 상당 | 8급 상당 | 9급 상당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율 | | 78% 이내 | 22% 이상 | | |

〔별표3〕

성주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

| 기관별 / 직급별 | 총계 | 본청 | 의회사무과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읍면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계 | 540 | 264 | | | 14 | |
| ⋮ | | | | | | |
| 일반직 계 | 421 | 222 | | 48 | 8 | 136 |
| ⋮ | | | | | | |
| 5급 | 25 | | | | 1 | |
| 6급 상당 이하 계 | 392 | 208 | | 47 | 7 | 126 |
| 별정직 계 | 18 | | | 12 | | |
| 6급 상당 이하 계 | 18 | | | 12 | | |
| ⋮ | | | | | | |
| 기능직 계 | 69 | 36 | | | 3 | 18 |

## 개 정 안

〔별표1〕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

| 구분 | 일반직 | 기능직·고용직 | 별정직·정무직 |
|---|---|---|---|
| 비율 | 85% 이상 | 12% 이내 | 3% 이내 |

〔별표2〕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2. 기능직 공무원

| 구분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10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율 | 5% 이내 | 17% 이내 | 22% 이내 | 56% 이상 | 삭제 |

4. 별정직 공무원

| 구분 | 5급 상당 | 6급 상당 | 7급 상당 | 8급 상당 | 9급 상당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율 | | 43% 이내 | 57% 이상 | | |

〔별표3〕

성주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

| 기관별 / 직급별 | 총계 | 본청 | 의회사무과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읍면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계 | 547 | 254 | | | 31 | |
| ⋮ | | | | | | |
| 일반직 계 | 443 | 218 | | 59 | 19 | 140 |
| ⋮ | | | | | | |
| 5급 | 26 | | | | 2 | |
| 6급 상당 이하 계 | 413 | 204 | | 58 | 17 | 130 |
| 별정직 계 | 7 | | | 1 | | |
| 6급 상당 이하 계 | 7 | | | 1 | | |
| ⋮ | | | | | | |
| 기능직 계 | 65 | 30 | | | 9 | 14 |

[별표 3]

# 성주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(제4조관련)

| 기관별 / 직급별 | 총 계 | 본 청 | 의 회 사무과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읍 면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총계** | 547 | 254 | 12 | 96 | 31 | 154 |
| **정무직 계** | 1 | 1 | | | | |
| 군수 | 1 | 1 | | | | |
| **일반직계** | 443 | 218 | 7 | 59 | 19 | 140 |
| 4급 | 1 | 1 | | | | |
| 4~5급 | 3 | 2 | | 1 | | |
| 5급 | 26 | 11 | 3 | | 2 | 10 |
| 6급 상당 이하 계 | 413 | 204 | 4 | 58 | 17 | 130 |
| **별정직 계** | 7 | 2 | 1 | 1 | 3 | |
| 6급상당 이하 계 | 7 | 2 | 1 | 1 | 3 | |
| **연구사 계** | 3 | 3 | | | | |
| 학예연구사 | 1 | 1 | | | | |
| 임업연구사 | 1 | 1 | | | | |
| 기록연구사 | 1 | 1 | | | | |
| **지도직 계** | 28 | | | 28 | | |
| 지도관 | 3 | | | 3 | | |
| 지도사 | 25 | | | 25 | | |
| **기능직 계** | 65 | 30 | 4 | 8 | 9 | 14 |